



국가인권위원회공보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8월 15일

제17권 제4호

알 립

- 국가인권위원회공보는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인격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들의 이름, 소속기관, 주소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까지 발간된 공보는 그 전문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에 게재되고 있으므로,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공 지 사 항

1	인사발령 등	588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주요 동정	591
3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및 처리 현황	595
4	진정사건 처리 현황	597

법령 · 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표명

1 2019. 4. 11.자 결정 [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606

- [1] 농어촌지역 노인 돌봄을 위하여 경로당 복지기능 확대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관련 법령 등에 마련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바람
- [2] 농어촌지역 노인의 평생교육 학습기회 보장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인권교육을 포함한 농어촌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방안 등을 마련하기 바람
- [3] 농어촌지역 여성노인의 취약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농어촌 여성노인 인권 증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 바람
- [4] 농촌 고령화 공동시설 중 공동생활홈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관련 법령 등에 마련하기 바람

2 2019. 6. 24.자 결정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615

- [1]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이나 범위 등의 확대를 검토할 것
-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개정 등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에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수립 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시행할 것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6 제1항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그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 조항을 신설할 것
- [4] 대규모 점포 등 유통업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확인하여, 서서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 [5]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및 그 세부기준과 미 이행 시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것

3 2019. 7. 9.자 결정 19빙분0001800 [2019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 631

-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함.
- [1]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징계별로서의 입창 처분은 가급적 지양하기 바람
 - [2] 군 영창 진정보호실 내 화장실의 차폐시설 유무를 점검하고 차폐시설이 없는 곳은

설치하기 바람

- 【3】 수용자 접견 및 전화 내용을 일률적으로 기록하는 관행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4】 ‘수용자신상명세서’상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5】 영창 구금일수 산정, 권리구제 사항에 대한 고지 절차, 진정권 보장 관련 안내 절차가 규정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례를 전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6】 특정 식기류 사용 불허 관행을 다른 수용시설의 편의제공 기준에 맞추어 개선하기 바람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1	2019. 1. 18.자 결정 18진정0698100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침해】 6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찰총장에게, 송달 주소 변경 등 처분결과 통지 과정에서 통지 대상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0000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서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2	2019. 1. 18.자 결정 17진정0848400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 6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고, 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및 예규 등을 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비실명 조치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관련 절차 및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 	
3	2019. 1. 18.자 결정 18진정0338300 【경찰의 부당한 휴대폰 압수 등】 .. 660	
	0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4	2019. 1. 31.자 결정 18진정0620200 【부당한 현행법 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667	

○○○○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법 체포요건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5 2019. 2. 26.자 결정 18진정0654500 【경찰의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673

○○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찰장구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6 2019. 2. 26.자 결정 17진정0953100, 17진정0912700 병합 【경찰의 과잉진압 등에 의한 인권침해】 681

○○지방경찰청장에게, 경비계획 수립 시 집회해산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집회장소의 지형·지물 등 사고발생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7 2019. 4. 29.자 결정 18진정0157700, 18진정0531600 병합 【휴대전화 일괄 수거 및 파마·염색 금지 등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 695

[1] ○○○○중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2] ○○○○중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두발상태에 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3] ○○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염색과 파마 등을 전면 제한하는 두발 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8 2019. 6. 5.자 결정 19진정018720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중 방어권 침해 등】 706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관행, 조사대상자에게 본인의 혐의가 무엇인지 고지하지 않는 조사관행을 개선할 것,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원출입기록 등을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에 「행정조사기본

법」 제17조 조사의 사전통지 규정과 관련하여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임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조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현지조사서 등에 기재하는 ‘조사목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구체적으로 목적을 기재하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

차별행위 조사결정

1 2019. 6. 5.자 결정 17진정0119900 [지방공무원 호봉 산정시 민간 경력 차별] ... 731

- [1]** 피진정인 1(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유사경력을 평가할 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하여 ‘상근’의 의미를 규정할 것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각 기관의 호봉경력평가심의회가 유사경력을 평가할 때 경력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
- [2]** 피진정인 2(○○시장)에게,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진정인의 ○○○○○○연구원 및 ○○대학교 ○○○○연구원 경력의 가치를 재심의 할 것을 권고

2 2019. 6. 5.자 결정 19진정0378800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 차별] ... 741

피진정인에게, 향후 성과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정량평가) 내용 기준’ 마련 시 육아휴직 기간을 비근무기간 감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3 2019. 6. 5.자 결정 18진정0189500 [기능직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기준 차별] ... 749

피진정인에게,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에 있어 기능직에 대한 차별처우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향후에도 특정직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

인권도서관 신착자료

1 인권위 간행물 759

2 신착 단행본 761